

허가번호	멸종위기 ☐ 포획 ☐ 채취 ☐ 방사 ☐ 이식 ☐ 가공 야생동·식물 ☐ 유통 ☐ 보관 ☐ 수출 ☐ 수입 ☐ 반출 ☐ 허가증 ☐ 반입 ☐ 훼손 ☐ 고사		
제 호			
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상호(명칭)		전화	
주소			
허가사항	대상지역	L	
	대상종명		
	수량		허가기간
	목적·용도		
	허가조건		
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의 ☐포획 ☐채취 ☐방사 ☐이식 ☐가공☐유통 ☐보관 ☐수출 ☐수입 ☐반출☐반입 ☐훼손 ☐고사를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[인]			
유의사항 1.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의 포획·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. 2. 포획·채취등을 한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은 5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3. 화약류·덫·울무·그물·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·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. 4.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			

(뒤 쪽)

멸종위기야생동·식물의 포획·채취등 신고내역					
일 시	멸종위기종	개 체 수	포획·채취장 소	포획·채취방법	담당자 확인